

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6. 6. 23.>

대도시권의 범위 (제2조관련)

권역별	범위
수도권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
부산·울산권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·김해시·창원시·거제시·밀양시
대구권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구미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·고령군·성주군·칠곡군·의성군·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원군
광주권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광산구·나주시·담양군·화순군·함평군 및 장성군
대전권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·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·보은군·옥천군
전주권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·익산시·군산시·완주군